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547호
- 발의자 : 김춘례 의원(찬성자 11명)
- 발의일자 : 2021년 8월 9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120다산콜재단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20다산콜재단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시 상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이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개월 이내로 축소하여 개정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 또한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결산완료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우리 위원회 김춘례 의원(성북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조례 변경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상기 법령의 개정일은 2019년 12월 3일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종합적인 운영 조례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개정내용이 반영되기까지 1년여가 소요¹⁾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 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상기 조례가 개정될 당시 각각의 출자·출연 기관 조례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면 입법경제성도 확보했을 것이므로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경우 공기업담당관을 포함한 집행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음.

1) 해당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되어 개정 완료되었음.